

교원연구년제 규정

(제정 2004. 9. 1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「교원 인사관리 규정」 제6조에 따라 전임교원(이하 “교원”이라 한다)의 연구년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9.1>

제2조(용어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연구년제란 교원이 수업과 학생지도의 의무를 면제받고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, 연구년, 연구학기, 창업연구년으로 구분한다.
2. 연구년이란 본교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급여 또는 연구비를 지원받고 1년간 국내·외 대학, 연구기관,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학기 및 창업연구년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한다.
3. 연구학기란 본교로부터 급여 또는 연구비를 지원받고 1학기 동안 국내·외 대학, 연구기관,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.
4. 창업연구년이란 본교 또는 창업 관계기관으로부터 급여 또는 연구비를 지원받고 창업을 목적으로 1년간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.

[본조개정 2020.9.1.]

제3조(신청자격) ① 연구년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연구학기의 경우 제2호와 제3호는 2분의 1을 적용한다. <개정 2023.11.19., 2024.3.1.>

1. 신규임용 후 6년 이상 재직한 교원 <신설 2024.3.1.>
2. 직전 연구년 실시 후 6년 이상 재직한 교원 <신설 2024.3.1.>
3. 정년퇴임 예정일까지 잔여기간이 4년 이상인 교원 <신설 2024.3.1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개인의 연구업적이나 소속 학과의 핵심 평가지표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교원에 대해 연구년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24.3.1.>

③ 연구년 신청자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교원연구년제 세칙」으로 정한다. <개정 2024.3.1.>

[본조개정 2020.9.1.]

제4조(기간) ① 연구년 기간은 연구년 및 창업연구년은 1년, 연구학기는 1학기로 한다.

② 연구년 기간은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 연구년에 한정하여 1년 이내에서 연장을 허가하되 연장기간은 휴직으로 처리한다.

③ 연구년은 연구학기 및 창업연구년을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창업연구년은 1회로 한정한다.

[본조개정 2020.9.1.]

제5조(신청 및 추천) ① 교무처장은 매 학기 연구년 예정 교원수 및 선정 방법 등을 포함하는 연구년제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연구년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[별지 제1호 서식]의 교원연구승인신청서를 포함한 제반서

류를 학(원)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<삭제 2024.3.1.>

④ 학(원)장은 소속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학 및 학과(전공)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수업 대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[본조개정 2020.9.1.]

제6조(심사 및 승인) ① 교무처장은 연구년 추천 교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연구년 대상 교원에 대한 심사기준, 선발방법 및 선발인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교원연구년제 세칙」으로 정한다. <2024.3.1.>

③ 제3조의 신청자격 등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,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원에 대하여 연구년을 승인할 수 있다.

④ 총장은 연구년을 승인받은 교원(이하 “연구년 교원”이라 한다)에게 학술정보 수집, 학생교류, 자매결연 협정 등 대학발전에 필요한 특별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.

⑤ 연구년 교원은 승인받은 전체 기간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부 또는 전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⑥ 연구년 교원이 연구년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 선정 시 기득권은 인정하지 아니하며, 개인적인 사유로 포기한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연구년제 신청을 제한한다.

[본조개정 2020.9.1.]

제7조(신분보장 및 처우) ①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중 본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다.

② 연구년 기간은 승급 및 승진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에서 감하지 아니한다.

③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중 학생지도 활동비를 제외한 보수 전액을 받는다. 다만, 연구학기 또는 국내 연구년 교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보수 및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삭 제 <2022.12.14.>

⑤ 국외 연구년 교원이 기간을 연장하여 휴직하는 경우 휴직기간 중 보수는 「교원인사규정」에 따른다.

[본조개정 2020.9.1.]

제8조(허가취소 및 징계) 연구년을 승인받은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총장은 해당 교원의 연구년을 취소할 수 있고, 이 경우 연구년 기간에 지급된 연구업무수당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1. 「교원 징계 규정」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

2. 연구년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

3. 연구년 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하거나, 총장의 소환 명령에 불응한 경우

4. 제4조제2항에 따른 휴직 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하지 아니하거나, 총장의 소환 명령에 불응한 경우

[본조개정 2020.9.1., 2022.9.1.]

제9조(연구결과보고서 제출) ①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종료 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6조제4항에 따라 특별과제를 부여받은 교원은 연구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[본조개정 2020.9.1.], [조명변경 2024.3.1.]

제10조(연구실적물 제출) ①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종료 후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연구계획은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년 기간 2분의 1 이전에 [별지 제4호 서식]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교무처장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4.3.1.>

② 연구년 및 연구학기 교원은 국제전문학술지는 2년 이내, 그 밖의 연구실적물은 1년 이내에 「교원업적평가규정」[별표 1]에 따라 각각 100점과 50점 이상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3.1.>

③ 창업연구년 교원은 1년 이내에 창업활동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교원에 대하여는 일체의 교내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⑤ 연구실적물에는 “이 논문(저서 등)은 0000년도 전주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따라 이루어졌음” 이라고 명기하여야 한다.

[본조개정 2020.9.1.]

제11조(의무 및 반환) 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즉시 복귀하여야 하며, 연구년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무하여야 한다.

② 전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교원은 이행하지 않은 기간에 비례하여 연구년 기간에 받은 보수를 반환하여야 한다.

[본조개정 2020.9.1.]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규정폐지에 관한 경과조치)

1.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교원 해외파견 연구규정과 교원 안식학기 규정은 폐지한다.

2. 이 규정 시행 당시 교원 해외파견 연구규정에 의하여 해외파견을 허가받고 연구업무를 수행 중인 교원과 교원 안식학기 규정에 의하여 안식중이거나 예정인 교원은 규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3-2-24-4 교원연구년제 규정

② (경과조치) 2008학년도 교원연구년(해외·국내)제 시행 교원에 대해서는 제13조 제2항의 교원연구지원 지침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8.31.>

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12.14.>

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3.11.19.>

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 <개정 2023.11.19., 2024.3.1.>

교원 연구년 승인신청서

구 분	☐ 해외연구년 ☐ 국내연구년 ☐ 연구학기 ☐ 창업연구년				
소 속		직 급		성 명	
연구과제명	(국문) (영문)				
연구기간	20 . . . ~20 . . .			연구기관	
제출예정 연구실적물	☐ 국제전문학술지 ☐ 전국규모학술지 ☐ 저서 ☐ 공연·전시 ☐ 특허·신안 ※ 연구실적물은 연구년 종료 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(다만, 국제전문학술지는 2년 이내 제출)				
연구자 서 약	본인은 연구년 기간 동안 임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전주대학교 「교원연구 년제 규정」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,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지급 받은 보수 및 연구비를 반환하겠습니다. 또한, 연구년 종료 후 1년 이내에 전국규모학술지 또는 2년 이내에 국제전문 학술지를 제출하겠습니다. 서약인 : (인)				
담당교과목 대체 현황	년도 학기		년도 학기		
	교과목명	담당교수	교과목명	담당교수	
수업 및 업무 진행사실확인	본 교원이 위와 같이 연구년을 시행하여도 본 대학의 수업진행(행정업 무 진행)등 학사업무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 학과장(전공주임) : (인)				

() 대 학 장 (인)

3-2-24-6 교원연구년제 규정

[별지 제2호] 삭제 <2023.11.19.>

[별지 제3호] 삭제 <2023.11.19.>

[별지 제4호 서식] <개정 2024.3.1.>

연구계획변경신청서

소속기관				
연구책임자	직급		성명	
당초계획				
변경계획				
변경사항				
변경사유 :				
위와 같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년 월 일				
신청인 : (인)				
전주대학교 총장 귀하				

[별지 제5호 서식] <개정 2024.3.1.>

()연구기간 연장 신청서

소속		직급		성명	
당초연구기간					
연장희망기간					
연구기간 연장사유: (구체적으로 기술)					
위와 같이 연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: (인)					
추천인의 의견 : 년 월 일 추천인 : (인)					
붙임 : 1. 서약서 1부 2. 관련 ()기관장(또는 지도교수) 추천서 1부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					

※ 추천인은 소속 학장이어야 한다.

[별지 제6호 서식] <개정 2023.11.19., 2024.3.1.>

연구년(연구학기) 연구결과 보고서

소 속	대학			(학)과
직 급		성 명		
연구기간				
연구기관				
연구목적				
연구결과 개요 (*구체적인 내용 기술)				
연구결과 개요				
현지대학 (기관, 회사)현황 (*구체적인 내용 기술)				

상기와 같이 ()연구 결과를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보고자 : (인)

전주대학교 총장 귀하